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박 범 계

●**법률 제1793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선고”를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불기소처분”을 “불송치결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을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는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기소유에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를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에나 제1항제3호·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를 “제1항제1호·제2호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같은 항 제3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변 창 흠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법률 제17938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 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